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나2190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나21901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21 선고 2019가단2106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민호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

변론종결 2021. 11. 4.

판결선고 2021. 11. 18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가단2106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/33 지분에 관하여 2015.

8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 C, D, E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3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김천수, 판사 안성민

별지